

특허보상문제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차이

특허청 반응병 사무관

1. 서론

최근 신문기사에 일본의 청색LED발명가에게 2000억원이라는 보상금을 주도록 한 판결이 나와서 직무발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연구원(또는 발명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일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고 이에 맞는 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면 한다.

먼저, 직무발명이라 함은 근로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勤勞者 등”이라 한다)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使用者 등”이라 한다)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근로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특허법 제39조). 여기에서의 직무발명의 개념은 특허법상의 개념이나 특허법의 규정이 실용신안법과 의장법에도 준용되고 있어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발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은 특허법상의 發明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상의 考案과 의장법상의 創作까지도 포함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그러나 근로자 등이 한 발명이 일반적으로 모두 직무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 제39조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발명만이 직무발명으로서의 취급을 받게 된다.